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법률안
(박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7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2. 10.

발 의 자 : 박진·유상범·성일종
조명희·황보승희·태영호
유경준·정경희·박완수
김석기·김영식·홍문표
한무경·최춘식·이명수
이양수·하영제·김선교
이채익·김정재·윤상현
이주환·정진석·권성동
엄태영·조해진·추경호
권명호·지성호·정운천
조태용·배준영·전주혜
한기호·신원식·최형두
구자근·허은아·서정숙
김도읍 의원(4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2년 2월,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는 어떤 산업분야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산업 분류 체계인 「그린 택소노미(Green Taxonomy, 녹색분류체계)」의 최종안을 확정·발표하였음.

녹색산업으로 분류될 경우 녹색금융 및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투자자들의 신뢰도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 포함 여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.

EU는 이러한 녹색분류체계에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계획·자금·부지 등을 전제로 하여 원자력에너지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였음.

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신·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포함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원자력에 대한 녹색산업 분류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,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).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수소·산소 등의 화학”을 “물리·화학적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원자력

마. 그 밖에 석유·석탄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신에너지”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·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물리·화학적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그 밖에 석유·석탄·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	라. 원자력
<신설>	마. 그 밖에 석유·석탄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